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조직 및 정원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12월 29일

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00호

#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조직 및 정원 규정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1]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기구표

- 여성비전센터의 ‘여성가족사업팀’ 을 ‘여성사업팀’ 과 ‘가족사업팀’ 으로 분리 하고 청소년수련관의 ‘스포츠운영팀’ 을 여성비전센터로 개편 한다.
- 청소년수련관의 ‘청소년팀’ 을 ‘청소년활동팀’ 과 ‘청소년교육팀’ 으로 분리하고 청소년사업국의 ‘청소년놀터’ 를 삭제한다.

[별표2]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정원표

- 총계 란의 3급 ‘15’ 를 ‘16’ 으로, 4급 ‘14’ 를 ‘15’ 로, 5급 ‘25’ 를 ‘24’ 로, 6급 ‘29’ 를 ‘28’ 로 한다.
- 행정직 란의 3급 ‘12’ 를 ‘13’ 으로, 4급 ‘11’ 을 ‘12’ 로, 5급 ‘20’ 을 ‘19’ 로, 6급 ‘23’ 를 ‘22’ 로 한다.

[별표3]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팀별 업무분장표

- 기획홍보팀의 ‘전산관리’ 를 ‘모두누리센터 전산관리’ 로 한다.
- ‘여성가족사업팀’ 을 ‘여성사업팀’ , ‘가족사업팀’ 으로 분리하여 개편한다.

- 청소년수련관의 ‘스포츠운영팀’ 을 여성비전센터로 개편한다.
- 청소년정책팀의 ‘특성화 사업’ 삭제한다.
- ‘청소년놀터’ 를 삭제한다.
- 청소년팀을 ‘청소년활동팀’ 으로 명칭변경하고 ‘청소년교육팀’ 을 신설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